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4일, 김영배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공청회 개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6.03.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배의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대한민

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기후 위기 등 복합위기를 겪고 있음.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을 혁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임.

사회연대경제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방식으로,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원리로 인정한 사회·경제발전 모델임. 따라서 사회연대경제는 국제적으로 대안적 경제모델이자 지역과 국가혁신의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실제로 사회연대경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과 스웨덴, 덴마크 등 대표적 복지국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력이자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관련 법·제도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의 분절성으로 인한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음.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며, 현재의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임. 따라서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주요한 발전 모델로 호명하여 정책과 제도 안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위상을 공고하게 만들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사회적 금융 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또한 지역순환 경제 체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에 지방정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를 구현하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제정안 등 9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사회연대경제는 특정 이념과 결부된 측면이 있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관한 개별부처의 관리·지원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정부 의존을 심화시켜 자생력이 약화되는 것이 우려됨.
- 사회연대경제는 유럽의 협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에 부합하고, 불평등·양극화 등 시장주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행정안전부가 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소외된 계층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